

주주각위

제5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
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우리회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5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※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■ 아 래 ■

1.일 시 : 2013년 2월13일 (수) 오전 09시

2.장 소 : 경남 양산시 유산동 30번지 넥센타이어주식회사 본사 강당

3.회의목적사항

<보고안건>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

<부의안건>

제1호 의안 : 제55기(2012년 1월 1일 ~ 2012년 12월31일) 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이익잉여금처분(안) 승인의 건

※상기 제1호 및 제2호 의안에 대해서 당사 정관 제44조 제4항, 상법 제449조의2에 의거하여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시점에 이사회에서 승인 하고 주주총회에서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제3호 의안 : 이사선임의 건

성 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관계	당해법인과관계	비 고
이 현 봉 (사내이사)	1949년 7월 19일	현, 넥센타이어(주) 대표이사	이사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재선임

제4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※세부내용은 붙임 참조)

4.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2013년 1월 28일



대표이사 이현봉 (직인생략)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경동

붙임 - 제4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
<p>제 10조의2(주식매수선택권)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</p>	<p>제 10조의2(주식매수선택권)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<u>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
<p>제 10조의2(주식매수선택권) ② 2. 주요주주(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특수관계인. 다만, 당해 법인의 임원(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)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)는 제외한다.</p>	<p>제 10조의2(주식매수선택권) ② 2. 주요주주(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특수관계인. 다만, 당해 법인의 임원(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)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)는 제외한다.</p>
<p>제 10조의3(주식의 이익소각)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으며 소각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,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써 결정한다.</p>	<p>삭제</p>
<p>제 15조(사채의 발행) (신설)</p>	<p>제 15조(사채의 발행)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</p>
<p>제 15조(전환사채의 발행)</p>	<p>제 15조의2(전환사채의 발행) 좌동</p>
<p>제 32조(이사 및 감사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 32조(이사 및 감사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</p>

<p>제35조의2(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 (신설)</p>	<p>제35조의 2(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 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4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 ②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(경업금지), 제397조의2(회사 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
<p>제36조(감사의 직무)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p>	<p>제36조(감사의 직무 등)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⑤감사는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 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</p>
<p>제44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) (신설)</p> <p>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 ④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⑤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 ⑥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3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44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) 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 ③좌동 ④좌동 ⑤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⑥좌동 ⑦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
<p>부칙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9조 및 제44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</p>